

2010. 04. 13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2
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9
3.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 - 28
4.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53
5.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63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 - 68
7.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 - 76

<의안번호 제2010 - 13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 04. 0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 04. 07.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09. 2. 6)에 따라 납세자의 세율부담을 완화코자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09. 5. 29. 조례 제1926호)하고 부칙에 '09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09년도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 '10년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조례개정 권고안에 따라 도시계획세율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규정한 거창군세

- 조례('09. 5. 29 조례 제1926호)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입법보완 시까지 군민 세부담을 완화함
-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7조, 제190조, 제237조, 제238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 2010년도 행정안전부 세율인하 권고 기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0. 2. 19~2010. 3. 2)결과: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거창군세조례를 정비한 후 시행하였으나,
- '09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결과 군민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전 「지방세
법」개정이 곤란하여,
- 행정안전부 세율인하 권고 기준에 따라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거창군세조례 부칙에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2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본조신설 2009.5.21]

'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

I 추진 배경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 지방세법 개정('09.2.6)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

※ '09.5월까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예정

금년도에 달라진 재산세 과세표준 제도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2009. 2. 6)
 - 주택60%±20%p, 토지·건축물 70%±20%p

□ 재산세분 목적세 세부담 증가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발생 ※ 특히, 주택분의 경우 과표비율이 전년대비 10% 증가

- 주택분 재산세 및 목적세 세부담 증감효과 -

세 목	세 율			과표 비율			세부담 효 과
	'08	'09	인하율	'08	'09	증가율	
재 산 세	0.15~0.5%	0.1~0.4%	△25~△50%	50%	60%	20%	△13%
도시계획세	0.15%	0.15%	-	50%	60%	20%	7.4%
공동시설세	0.05~0.13%	0.05~0.13%	-	50%	60%	20%	25.8%

-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국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부담 완화방안 검토 필요

Ⅱ 자치단체 조례개정 관련 우리부 권고 기준

□ 목적세 세율인하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현행 대비 0.01%p씩 인하

- ◆ 도시계획세 : 0.15% → 0.14% (△6.6% 인하)
- ◆ 공동시설세 : 0.05~0.13% → 0.04~0.12% (△20~△7.7%인하)

*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 및 동법 제2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목적세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일정범위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조례개정 시한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조례개정

□ 조례개정 세목 및 효력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만 세율을 인하하고 '09년도 목적세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 ('10년부터 지방세법에 반영)

* 재산세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외 세율인하 조례개정 불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대상 세목 -

자치단체별	세 목	관련 규정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도	공동시설세	" 제2항
시·군	도시계획세	" 제3항

□ 「거창군세조례」 (개정 2009.5.29 조례 제1926호)

제1조 ~ 제91조(생 략)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 2005.5.25, 2009.5.29)

부칙 (개정 2009.5.29 조례 제1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결정에 따른 군 세입 영향분석 보고

□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

- 비 율: 주택 - 60%, 토지·건물 - 70%
- 적용방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세액

□ 분석조건

-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2008년 가격 적용
- 재산세율: 지방세법 개정분(2009. 1. 13) 적용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행정안전부 권고안(0.01%하향) 적용
- ※ 도시계획세는 군세조례, 공동시설세는 도세조례 개정 필요

□ 분석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증감
	계	재산	도시	공동	교육	계	재산	도시	공동	교육	
계	3,750	2,051	903	386	410	3,745	2,044	934	358	409	-총액:감0.13% -군세:증0.8% (24백만원)
주택	1,006	466	359	88	93	944	390	387	89	78	
건물	1,041	448	205	298	90	1,051	480	206	269	96	
토지	1,703	1,137	339		227	1,750	1,174	341		235	

- 재산세액 소폭 감소, 도시계획세의 증가로 군세입 24백만원 증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5%)에 따른 도시계획세율 인하 권고안(0.15%→0.14%)으로 조례개정시 미세한 세입증가
-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1.5%내외로 감소가 예상 ⇒ 세입 소폭감소

□ 조례개정 여부 판단

- 행정안전부 조례개정 권고안 미준수시 부동산교부세 보전대상 제외
- 조례개정(세율인하)시에도 전년도 수준의 군세입 유지 가능
- ⇒ 5월중 세율인하 조례개정: 재산세(법개정 반영), 도시계획세

<의안번호 제2010 - 14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등이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 및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의 종류와 기준 및 금액 신설 (안 제3조, 안 별표 1의2 신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 주민등록등 · 초본 등 13종

나. 수수료의 징수방법 개선, 납부자의 편의 도모(안 제5조).

- 일반수수료 →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 추가

-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 수수료 →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 추가

다. 수수료의 반환 규정미비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고려한 수수료의 환불 근거 마련(안 제6조 단서 신설).

-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침

- 발급기관의 착오, 민원사무 종결 전 민원 취하 → 납부한 수수료도 반환

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정비(안 별표 1).

- 행정안전부의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 및 관계 부처로의 사무이관에 따른 신상에 관한 항목 정비

- 부양가족사실확인: 외교통상부 이관 ⇒ 존치

- 독자사실확인: 병무청 이관 ⇒ 존치

- 호(제)적부 멸실확인(무적자사실확인): 법원행정처 이관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사실확인으로 명칭 변경 존치

-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 (식품, 공중위생)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관리대장 사본교부
-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 관리대장 사본교부
- 철거사실 증명 ⇒ 건축물말소대장 사본교부
- 개별 법령으로 명시되거나 폐지된 수수료 항목 삭제
 - 지방세납세증명 ⇒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료 발급
 - 건설기계 저당(말소)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수수료 명시(대당 1천원)
 -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
 - 조립실적확인 ⇒ 발급 실적 없음
 -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발급 실적 없음
 - 원천징수 공제증명 ⇒ 발급 실적 없음
 - 보상금 지불증명 ⇒ 토지수용확인서로 대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전자정부법」 제2조, 제33조, 제3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28. ~ 2010. 2. 19.)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등록규제 완화 1건(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침」에 따라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일부개정 하였으며,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2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개별법령으로 명시되거나 폐지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편익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별표] <개정 2009.9.29>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15, 2007.1.3, 2008.2.29>

1.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3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통보 등(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38조(수수료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벌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범위, 감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9.12.31, 2004.3.17, 2010.1.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②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납세증명서)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9.9.21>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09.9.21>
[제목개정 1999.12.31]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 항공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3, 2003.1.2, 2005.11.30>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초과의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에 한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삭제 <2003.1.2>
10.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31조제6항 각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말소등록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3, 1998.8.20>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초과의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에 한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양도후 6월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관할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의 장이 확인한 서류(자동차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0. 등록령 제3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08.2.29>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 통보

1. **사실확인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2001.7.20)을 '07.2.28일자로 폐지함을 통보합니다.**

2. 사실확인서발급지침은 타부처의 업무를 우리부 예규로 관리·운영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04.1.16 사실확인서발급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침 폐지에 협의하였습니다.

3. 지침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폐지 협의일('04.1.16)로 부터 3년여 경과한 '07.2.28일자로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을 폐지함을 3개월전('06.12.27)에 관련부처 4개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4. **외교통상부, 농림부, 병무청, 법원행정처에서는 사실확인서발급지침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자치단체에서는 지침폐지일 전에 해당부처에서 근거규정 등을 안내 받아 적법하게 사실확인서 관련 민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시 군 구에 즉시 통보요망)**

※ 관계부처 및 연락처

구 분	관계부처		전화번호	비 고
	부처명	담당부서		
부양가족사실확인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2과	02-2100-8088	
가족자가사육사실확인	농림부	축산정책과	02- 500-1900	
독자사실확인	병무청	현역입영팀	042-481-2734	
무적자사실확인	법원행정처	호적과	02-3480-1487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외교통상부장관(지외등포정책2과), 농림부장관(축산정책과장), 병무청장(현역입영팀장), 법원행정처장(조직과장), 서울특별시(시민협력과장), 부산광역시(시민봉사과장), 대구광역시(시민봉사과장), 인천광역시(자치행정과장), 광주광역시(민간협력과장), 대전광역시(자치행정과장), 울산광역시(자치행정과장), 경기도지사(총무과장), 강원도지사(혁신분권과장), 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지사(혁신분권과장), 전라남도지사(중소민원실장), 경상북도지사(세마을봉사과장), 경상남도지사(총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담당관

★제도혁신팀장

협조자

시행 제도혁신팀-288 (2007.01.25.) 접수 총무과-1498 (2007.01.30.)

우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108호 / www.mogaha.go.kr

전화 02-2100-3488 /전송 02-2100-4194 / nanuht@mogaha.go.kr / 공개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 규제개혁 추진

2009. 7.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1. 추진배경

- 우리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적인 법령이나, 예규·고시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원리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 2008년도에는 2007년도 “경쟁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조례·규칙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용역기간 : 2007. 6. 5.~11. 4.)” 결과를 토대로 총 6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33개의 과제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개선하기로 합의함

2. 기초 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 2008년도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용역기간 : 2008. 6.26.~11.25.) 실시
-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9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샘플링하여 이중 경쟁을 제한하는 14개 규제에 대하여 “개선 또는 폐지”의견 제시
- 우리위원회는 14개 규제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11개 규제에 대하여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선 추진

붙임 : 기초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2009. 7.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목 차

1.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1
2. 시장사용자에 대한 영업허가	4
3. 공영시설의 위탁관리 운영	6
4. 수강료 반환규정 미흡	8
5.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미흡	10
6. 제증명 수수료 불반환	13
7. 건축물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건축사협회의와 협의	14
8. 관할 지역 내 업체의 우대	16
9. 분노처리업의 지역제한	18
10. 견인대행업의 지역제한	19
11.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	20
12. 금융지원기회 차별	22
13. 관내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또는 지원	24
14. 특정시장에 대한 차별적 취급	26

6 제증명 수수료

□ 규제내용

- 기초자치단체가 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함

□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 상위법령 : 각 개별 법령
- 관련조례 : 각 기초 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조례(例示)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관련지자체 근거법령(例示)

- 1) 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 2)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 3)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
- 4)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 6)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 검토의견 : 개선

-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 자치단체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고 소비자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음

⇒ 변경 내지 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의안번호 제2010 - 15호>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 04. 0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 04. 07.

2.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9569호, '09. 4. 1공포)으로 법률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소관 위원회의 명칭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종전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관계 법령으로 이관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과 목적조항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조례 제명, 안 제1조 · 제2조).

- 조례 제명 변경: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인용법령 제명 변경: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나.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관계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삭제함

-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 ·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과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규정 ⇒ 조례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5조).
-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 ·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서 규정 ⇒ 조례 삭제(안 제6조, 제7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절차와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의2와 영 제12조의2에서 각각 규정 ⇒ 조례 삭제(안 제9조, 제10조).
-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기준과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대장규칙」에서 규정 ⇒ 조례 삭제(안 제13조, 제14조).
-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와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규정 ⇒ 조례 삭제(안 제19조, 제20조).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규정 ⇒ 조례 삭제(안 제26조).
- 그 밖에 삭제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별지서식을 삭제함(안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 포함) 시 제작 비용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군내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군수가 고시하고, 군 수입증지로 징수함

라.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의 관리·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함

마.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 광고를 하는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
-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음

바. 법령 개정으로 종전 ‘새주소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9장(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그 밖에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변경함(안 제12조, 제6장 제목,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도로명시설 ⇒ 도로명주소시설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의2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나. 예산조치: 2010년도 본예산 1,680천원(운영수당)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10. 2. 1. ~ 2010. 2. 21.)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개정되고, 관련법령, 시행령, 규칙 등에 종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전 조례의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항을 신설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체계적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개정 전>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2009.4.1 법률 제9569호 일부개정 후 현행>

○법률 제956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棟)번호(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호(號)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또는 층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지역안내판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4.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8조의3(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4(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 시·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개정 2009.4.1>)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개정 2009.4.1>) 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4.1>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개정 2009.4.1>)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10조 또는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 전단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길이와 폭(제6조제2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과 기초번호
 4. 도로구간의 도로에 부여할 도로명(이하 "예비도로명"이라 한다)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결정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3.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7.1]

제7조의3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또는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3.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

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현재의 도로명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3. 도로명의 변경 사유
4.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5.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명의 내력, 현행 도로명의 부여 사유와 도로명의 변경 사유
2.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의 개수 및 그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의 현황
3.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 변경 내용 및 절차(변경 내용 및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4항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고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후보도로명(2개 이상

일 때에는 1순위 후보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예비도로명 또는 후보도로명이 아닌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에 따른 동의 없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기초번호를,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같게 변경하는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10조(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① 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
2. 도로선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4. 도로명
5. 기초번호와 기초간격
6. 필지 경계와 지번
7. 건물등의 위치 및 형태

8. 건물번호와 그 주된 출입구
 9. 관공서·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이름
 10.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다리 등의 배경자료
 11.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원인자 부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그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이하 이 조에서 "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지역, 내용 및 계획도
 3.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
 4. 도로망 계획도
 5. 비용부담계획(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
- ②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는 그 인가·허가·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 ④ 도로·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 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
 2.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
-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조달 단가
 2.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
-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설치계획서
 2.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⑩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제1항제5호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그 비용 납부 예정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⑪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 ⑫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

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수정계획서에 적힌 예상 설치비(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8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를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⑭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

⑮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9.7.1]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8조(광고)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2.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광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1조 (도로구간등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 이 영 제11조의2제5항 및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등의 부여·변경·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명·기초번호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도로명·기초번호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변경 전·후의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구간등의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도로명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도로구간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기초번호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 다.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마. 기초번호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는 사항

6. 도로명·기초번호의 폐지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 도로구간 폐지 고시일

라.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전에 시장등은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변경·철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2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로명주소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7.1]

제23조 (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주민등록의 변경요청을 한 사실을 해당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

·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24조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신청을 받아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고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25조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고지를 생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7조(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또는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

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제28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2(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제9조(문서의 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보급한 도로명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

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09.8.14]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생략)

[시행 2009. 8.14] [행정안전부령 제98호, 2009. 8.14, 제정]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생략)

[시행 2009. 8.26] [행정안전부령 제102호, 2009. 8.26, 제정]

<의안번호 제2010 - 16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 04. 0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 04. 07.

2. 개정이유

종전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됨에 따라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제1조).

○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 변경

- 「측량법」 제28조 제4항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중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외에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기능을 추가하고, 지명의 조사내용 ·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10조).

- 지명의 조사 ⇒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하되,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하며,
-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 ⇒ 인접 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고,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

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의견청취,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에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나. 예산조치: 수요 발생시 필요 예산 편성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2. 1. ~ 2010. 2. 21.)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전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관련한 현행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안하려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
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
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
야 한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
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
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
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
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
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
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측량법」

2. 「지적법」

3. 「수로업무법」

제13조(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지명위원회와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금율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

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군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제4항에 의거 거창군에 설치하는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지방자치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지명에 대한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8. 1. 14)

제4조 (위원장이 직무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임시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심의, 결정사항으로 본다.

<의안번호 제2010 - 17호>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4. 0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4. 07.

2. 개정이유

-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조례로 신설하여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80호, 2009. 8. 13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와 같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5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규율함에 있어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따른 존속시한을 조례로 명시함(안 제
7조의2 신설)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함
(조례제정 · 시행일 2009년 12월 30일부터 5년간)

나.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로서 연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함(안 제8조제4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규정 삭제)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 생략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이므로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 하였으며,
-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을 제한코자 삭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09.10. 2] [대통령령 제21680호, 2009. 8.13,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의안번호 제2010 - 22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 04. 0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 04. 07.

2. 제안이유

- 삼도 경계지역인 고제면의 사회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문화체육회관 건립을 통하여 체육 · 문화 공간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거창 상수원보호구역 상류하천(황강천, 지방2급하천)내에 위치한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상수원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경작토지를 매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취득재산의 표시

□□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건립 부지

(단위 :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재산 소 유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5필지 / 건물 1동	4,128.2	23,766			사 업 비 : 200백만원
1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2	2,188	11,815	2010	문병규	
2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3	545	2,943		류기흠	
3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4	392	4,194		이운석	
4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4-1	732	3,952		오순이	
5	토지	고제면 농산리 255	106	532		오순이	
6	건물	고제면 농산리 254	165.2	330		고제포도 영농조합	

□□ 거창 상수원보호구역내 부지

(단위 :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재산 소 유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1필지	11,766	50,476			
1	토지	거창읍 양평리 972-1	11,766	50,476	2011	신정오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건립 부지 매입안은 고제면이 거창군 최북단의 3도 경계이자 관문으로 인근 도(전북, 경북)의 지역보다 문화·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고제면 지역에 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평생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고제중학교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10년도 사업비 10억중 국비 6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예산에 미편성 되어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예정(국민체육진흥기금)이며, 도비 2억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군비 2억원에 대하여는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예정

⇒ 2011년도 사업비 7억원(도비 4억원, 군비 3억원)확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함

- 거창 상수원보호구역내 부지매입안은 거창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하천(황강천, 지방2급하천)내에 위치한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상수원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연차별 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년차별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불검출
- ⇒ 2002년, 2007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 ⇒ 2003년 토지 매수를 신청하였으나 감정가(149백만원)와 희망가(400백만원)의 차이로 소유자 매도 포기
- ⇒ 2008년 12월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매수 신청을 권유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불투명
- ⇒ 매입시 감정가격과 매도 희망가격 차이로 소유자가 매도를 포기할 경우에 따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 공시지가 50,476천원 매도희망가격 500,000천원
- ⇒ 본 토지를 매입 후 남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농경지 (44,393m²)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
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

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의안번호 제2010 - 23호>

〔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04. 06.
- 나. 제 출 자 : 신주범의원 외1인
- 다. 회부일자 : 2010. 04. 07.

2.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저귀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자들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 적용
- 노인성 질환자가 사용할 기저귀 지급
- 노인성 질환자들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

나. 정의(안 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풀이

- 노인성 질환자 ⇒ 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치매, 중풍(뇌졸중)으로 확진을 받은 자
- 기저귀 ⇒ 노인성 질환자의 배설물(대·소변)을 받아 낼수 있는 물품

다. 지원대상(안 제3조).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라. 지원기준(안 제4조).

- 1주 3팩(10개/1팩)을 매월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최초 신청 경우 신청일 속하는 달의 남은 분량 지급)

마. 신청(안 제5조).

- 신청 ⇒ 별지서식으로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신청자 ⇒ 본인, 부양가족, 마을이장

바. 지원의 중단(안 제6조).

-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때
-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행정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
-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사. 시행규칙 및 부칙(안 제7조).

-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예산 확보 시 시행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나. 예산조치: 연간 60백만원(예산 확보후 실시)

다.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법적근거로 마련하였으며,
- 노인성 질환자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기저귀를 지급하여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별지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관련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